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216
----------	-------

발의연월일 : 2025. 8. 18.

발 의 자 : 전종덕 · 이수진 · 소병훈
김선민 · 고민정 · 최혁진
한창민 · 용혜인 · 추미애
김 윤 · 송옥주 · 윤종오
정혜경 · 손솔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 보건의료의 발전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국가가 공공보건의료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의 시설·장비 확충 및 우수 의료인력 확보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방의료원은 이 같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인해 의료인력의 대도시 유출 현상은 날로 심화되고 있으며, 지방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는 지방과 수도권 간의 의료서비스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지방의료원의 적정 인력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운영지침에 반영하도록 하고, 국가는 지방의료원의 인

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료인력 충원에 필요한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료원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제2항·제3항 및 제5항 신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하여 지방의료원의 적정 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운영지침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의료원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료인력 충원에 필요한 인건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료원의 운영지침 준수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고,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 및 보고의 범위·방법·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1조의2(운영지침) ① (생략)	제21조의2(운영지침) ① (현행과 같음)
<u><신설></u>	<u>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하여 지방의료원의 적정 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운영지침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u>
<u><신설></u>	<u>③ 국가는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의료원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료인력 충원에 필요한 인건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
② (생략)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u><신설></u>	<u>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료원의 운영지침 준수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고,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u>

	<u>및 보고의 범위 · 방법 · 절차</u> <u>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u>
--	--